

<논 문>

현물기부의 과세문제에 대한 소고

이 중 교*

|| 목 차 ||

I. 서 론	7	IV. 현물기부에 대한 과세상 쟁점	28
II. 선행연구와 세법상 현물기부에 대한 과세내용	9	1. 법인과 개인 간 과세형평성	
1. 선행연구		2. 사업자와 비사업자 간 과세형평성	
2. 기부금의 종류		3. 기부자의 현물기부 평가와 기부받는 자의 취득가액	
3. 현물기부에 대한 세법상 취급		V. 결 론	39
III. 현물기부 과세에 대한 주요국의 입법례	20		
1. 미 국			
2. 일 본			
3. 국가별 비교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투고일 : 2023. 6. 21. 1차수정일 : 2023. 7. 25. 게재확정일 : 2023. 8. 17.

<국문초록>

기부금은 금전으로 지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현물기부와 같이 금전 이외의 형태로 지출하기도 한다. 그런데 현물기부는 자산평가를 수반하므로 금전기부와 비교할 때 제도가 복잡하다. 현물기부의 경우 기부금을 산정할 때 시가와 장부가액 중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할지 문제되는바, 현행 세법은 기부금의 종류, 기부하는 자가 개인인지 또는 법인인지, 개인인 경우 사업자인지 또는 비사업자인지 등에 따라 서로 다르게 규정한다. 또한 기부금 수령단체의 취득가액도 일관적이지 않다. 본고는 현물기부에서 발생하는 과세문제에 대하여 검토하였는바,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과 개인 간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보면, 특례기부금의 경우 법인은 장부가액으로 평가하고 개인은 시가로 평가하는데, 법인의 현물기부를 유도하려면 법인의 경우에도 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 일반기부금의 경우 법인은 장부가액으로 평가하고 개인은 시가로 평가하는데,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과 같이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개인사업자의 일반기부금 지출이 기부금한도를 초과하는 것인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사업자와 비사업자 간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보면, 기부금의 경우 사업자에게는 필요경비 산입이라는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면서 비사업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사업자와 비사업자 간 과세형평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비사업자에게도 필요경비적 성격이 있는 소득공제를 허용하거나 사업자에게도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업자와 비사업자 간의 차별을 없애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비사업자인 개인이 일반기부금을 현물제공한 경우 기부금 수령단체의 취득가액은 그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기부자산의 평가액을 공익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개인과 법인이 공유하는 현물자산을 기부하는 경우 공익법인이 인식하는 취득가액이 분리되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이 경우에는 법인의 기부자산 평가액에 맞추어 공익법인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기부자산의 평가액과 공익법인의 취득가액의 불일치에서 생기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부자산의 평가액과 공익법인의 취득가액을 모두 원칙적으로 시가로 하여 세제의 정합성을 높이고 과세제도를 단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주제어** : 현물기부,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 시가, 장부가액

I. 서 론

세법상 기부금은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을 말한다(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통상적으로 기부금은 공익성을 띤 재산의 출연행위를 뜻하나, 세법상 개념은 그보다 광범위하여 증여, 채무면제, 면책적 채무인수, 제3자를 위한 변제, 저가양도, 고가매입 등을 통한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포괄한다.¹⁾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필요경비나 손금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²⁾ 그러나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공익목적으로 기부금을 지출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장려할 행위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이 중시됨에 따라 기업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수단으로서 기부가 활용되기도 한다.

세법은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기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공익성 있는 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나 손금산입을 인정한다.³⁾ 다만 기부금의 지

1) 이태로·한만수, 『조세법강의』, 박영사, 2018, 529~530면 ;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22, 644면.

2)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은 손금의 요건으로 사업관련성을 규정한다. 이에 비해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요건으로 사업관련성을 직접 규정하지 않으나, 필요경비의 성격상 사업관련성이 요구된다고 볼 것이다.

3) 기부는 증여의 일종이므로 기부금 수령단체에게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생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은 비영리단체가 기부금을 받으면 증여세를 과세하되, 공익법인 등이 기부금을 받으면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한다. 국가가 공익법인으로부터 증여세를 거둬서 이를 재원으로 공익업무를 하는 것보다 해당 공익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공익법인에게 세제혜택을 주고 공익업무를 맡기는 것이 사회국가적으로 유익하기 때문이다. 다만 공익법인이 공익목적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박탈하여 증여세나 가산세를 부과한다.

출을 필요경비나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은 국고(國庫)에서 기부금을 지원하는 것과 다름없고, 법인의 경우에 기부금을 무분별하게 지출하면 자본충실을 저해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부금 수령단체의 공공성의 정도에 따라 필요경비나 손금산입의 범위에 차등을 두고 있다.⁴⁾ 즉 공공성이 강한 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나 손금을 더 많이 인정한다. 나아가 비사업자인 개인의 기부행위에 대하여도 세제혜택을 부여하나, 그 방식은 사업자와 달리 세액공제의 형태를 띤다.

기부금은 금전으로 지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현물기부와 같이 금전이외의 형태로 지출하기도 한다. 그런데 현물기부는 기부자산의 평가를 수반하므로 금전기부와 비교할 때 복잡하다. 기부자산을 평가할 때에는 시가와 장부가액 중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할지 문제되는바, 현행 세법은 기부금의 종류, 기부자가 개인인지 또는 법인인지, 개인인 경우 사업자인지 또는 비사업자인지 등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기부자산의 평가액과 기부금 수령단체의 취득가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글은 현물기부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과세문제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개인과 법인의 과세형평성, 개인사업자와 비사업자인 개인의 과세형평성, 기부자산의 평가액과 기부금 수령단체의 취득가액의 일관성 등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이 글의 순서는 기부금의 종류와 현물기부에 대한 세법상 취급을 개관하고(Ⅱ장) 현물기부 과세에 대한 주요국의 입법례를 검토한다(Ⅲ장). 그 후 현물기부에 대한 과세상 쟁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고(Ⅳ장)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서 결론을 맺기로 한다(Ⅴ장).

4)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11285 판결.

II. 선행연구와 세법상 현물기부에 대한 과세내용

1. 선행연구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현물기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기부금 규정의 차이를 다룬 선행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황규영(2020. 6.)은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에 대한 법인세법 규정과 소득세법 규정이 불일치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상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손금한도를 소득세법이 담고 있는 내용과 같은 흐름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황규영(2020. 12.)은 법인세법에서는 적격기부금을 현물로 기부하였을 때에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반면 소득세법에서는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함으로써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보다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하여 법인세법 내용과 동일하게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권성준·송은주·허윤영(2021)은 미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의 조세지원 제도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한 후 조세지원 형평성 제고 방안, 현물기부의 기부액 평가 관련 규정 개선, 법인 기부문화 활성화 방안 검토 등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허원(2022)은 개인기부와 법인기부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비교한 후 현행 기부금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기부자별로 불합리한 차별을 유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현물기부의 경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과중한 납세순응비용을 유발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현물기부에 대한 연구가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현물기

부에 초점을 맞추어 개인과 법인의 과세형평성, 개인사업자와 비사업자인 개인의 과세형평성, 기부자산의 평가액과 기부금 수령단체의 취득가액의 일관성 등의 과세상 논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차별성이 있다.

2. 기부금의 종류

가. 의 의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기부금 수령단체가 공공성이 있으면 필요경비나 손금에 산입할 수 있고, 기부금 수령단체의 공공성의 정도에 따라 필요경비나 손금산입의 범위에 차이가 있다. 과거에는 기부금을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비지정기부금 등으로 구분하였으나,⁵⁾ 2022. 12. 31. 법인세법 개정 시 법정기부금을 특례기부금으로, 지정기부금을 일반기부금으로 변경하였다.⁶⁾

나. 기부금의 종류와 한도

(1) 특례기부금⁷⁾

특례기부금은 종전에 ‘법정기부금’ 또는 ‘50% 한도 기부금’이라고 부르던

-
- 5) 2022. 12. 31. 법인세법 개정 전에는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50% 한도 기부금’, ‘10% 한도 기부금’ 등의 용어를 사용하였다.
- 6) 그밖에 정치자금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1항), 우리사주조합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3항 전단), 고향사랑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등이 있으나, 이 글에서는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을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 7) 종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기부금을 ‘특례기부금’이라고 불렀다. 그 후 2010. 12. 27.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시 특례기부금에 속하는 기부금을 법정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으로 재분류하고 특례기부금 규정을 삭제하였다. 현행법상의 특례기부금은 과거의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2010. 12. 27.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였던 특례기부금과는 다르다.

기부금으로서 공익성이 강한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이다. 특례기부금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 ②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 ③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등 법률에 열거된 기부금, ④ 사립학교 등 법률 및 시행령에 열거된 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⑤ 국립대학병원 등 법률 및 시행령에 열거된 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등이 있다(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소득세법에는 법인세법상 특례기부금 외에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한 자원봉사용역의 가액도 특례기부금에 포함시킨다(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1호 나목).

법인이 특례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50%를 한도로 손금산입한다(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10년간 이월할 수 있다(법인세법 제24조 제5항). 당초에는 기부금한도를 적용하지 않았으나, 영리법인이 소득의 전액을 기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므로 2005. 12. 31. 법인세법 개정 시 50%의 한도를 설정하였다. 이에 비해 개인사업자가 특례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100%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2호). 개인이 특례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기부금한도가 적용되지 않고 소득 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다.

(2) 일반기부금

일반기부금은 종전에 ‘지정기부금’ 또는 ‘10% 한도 기부금’이라고 부르던 기부금으로서 특례기부금보다 공익성이 약한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이다. 일반기부금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유치원, 의료법인, 종교법인 등 법인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공익법인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있다(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제1호). 소득세법에는 법인세법상 일반기부금 외에 노동조합 가입자가 납부한 회비 등도 일반기부금에 포함시킨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2호 이하).

법인이 일반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과 특례기부

금 손금산입액을 뺀 금액의 10%를 한도로 손금산입한다(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제2호). 과거에는 기부금한도가 5%였으나 2010. 12. 30. 법인세법 개정 시 10%로 확대하였다.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10년간 이월할 수 있다(법인세법 제24조 제5항). 이에 비해 개인사업자가 일반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이 없으면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과 특례기부금 필요경비산입액을 뺀 금액의 30% 한도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당초에는 기부금한도가 20%였으나 2010. 12. 27. 소득세법 개정 시 30%로 확대하였다.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으면 ① (기준소득금액 - 특례기부금 - 이월결손금)의 10%, ② (기준소득금액 - 특례기부금 - 이월결손금)의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소득세법 제34조 제3항 제2호). 기부금의 필요경비산입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10년간 이월할 수 있다(소득세법 제34조 제5항).

(3) 비지정기부금

비지정기부금은 특례기부금 및 일반기부금이 아닌 기부금을 의미한다. 비지정기부금은 공익성 있는 단체 이외의 단체, 예컨대 동창회, 종친회 등에 지출한 기부금으로서 손금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다. 개인이 지출한 기부금의 세액공제 특례

사업소득만 있는 개인이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위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소득이 없는 개인, 사업소득자 중 보험모집인이나 방문판매원 등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⁸⁾ 사업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 특례기부금이나 일반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 1,000만원까지는 15%,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30%의 비율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소득세법 제

8) 보험모집인이나 방문판매원 등의 사업소득자는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이 불가능하므로 기부금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59조의4 제4항).

특례기부금의 경우에는 한도가 없으나, 일반기부금의 경우에는 ① (종합소득금액 - 특례기부금)의 10%, ② (종합소득금액 - 특례기부금)의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사업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 필요경비를 공제받은 경우에는 중복혜택을 배제하기 위하여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을 차감한다.

3. 현물기부에 대한 세법상 취급

가. 의 의

세법에서 기부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특별히 기부하는 물품에 대한 제한은 없다. 따라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품은 기부할 수 있다. 다만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잉여식품 등을 무상기증하는 경우에는 해당 식품 등의 장부가액 전액을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므로 현물기부에서 제외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3호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6항).

나. 개정연혁

(1) 법인이 기부하는 경우

2006. 2. 9.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은 법인이 현물기부하는 경우 법정기부금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고, 지정기부금과 비지정기부금에 대하여는 시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였다.

그 후 2006. 2. 9.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은 지정기부금과 비지정기부금에 대한 평가방법을 변경하였다. 즉 지정기부금과 비지정기부금을 현물기부한 경우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하락한 경우 한도초과액이 적어져서 손금이 많이 인정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취지로 개정한 것이다.⁹⁾

한편 2011. 3. 31.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은 지정기부금에 대한 평가방법을 변경하였다. 즉 지정기부금을 현물기부한 경우 법정기부금과 같이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되, 특수관계자에게 현물기부한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지정기부금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현물기부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이고, 특수관계자에게 현물제공한 경우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특수관계자를 통한 편법상속이나 증여를 차단하기 위한 취지이다.¹⁰⁾

그 후 2019. 2. 12. 조문번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으로 바뀌고 법정기부금이 특례기부금으로, 지정기부금이 일반기부금으로 바뀌었을뿐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위와 같은 개정연혁을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법인의 현물기부 평가규정의 개정연혁

구 분	2006. 2. 8. 이전	2006. 2. 9. ~ 2011. 3. 30.	2011. 3. 31. 이후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장부가액	장부가액	장부가액
지정기부금 (일반기부금)	시가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	장부가액 (다만 특수관계자의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
비지정기부금	시가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

9) 재정경제부, 『2005 간추린 개정세법』, 2006, 146면.

10) 기획재정부, 『2010 간추린 개정세법』, 2011, 198면.

(2) 개인이 기부하는 경우

2007. 2. 28.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은 개인이 현물기부하는 경우 법정기부금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고, 지정기부금과 비지정기부금에 대하여는 시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였다.

그 후 2007. 2. 28.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은 개인이 법정기부금을 현물제공한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고, 지정기부금과 비지정기부금을 현물제공한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때까지는 개인이 현물기부하는 경우와 법인이 현물기부하는 경우의 평가방법이 기본적으로 동일하였다.

그런데 2020. 2. 1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은 개인이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과 비지정기부금을 현물제공한 경우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였다. 법정기부금에 대하여도 지정기부금과 같이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한 것은 현물기부의 증가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이다.¹¹⁾ 개인이 법정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기부금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기부자에게 유리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 후 법정기부금이 특례기부금으로, 지정기부금이 일반기부금으로 바뀌었을뿐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위와 같은 개정연혁을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개인의 현물기부 평가규정의 개정연혁

구 분	2007. 2. 27. 이전	2007. 2. 28. ~ 2020. 2. 10.	2020. 2. 11. 이후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장부가액	장부가액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
지정기부금 (일반기부금)	시가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

11) 기획재정부, 『2019 간추린 개정세법』, 2020, 19면.

구 분	2007. 2. 27. 이전	2007. 2. 28. ~ 2020. 2. 10.	2020. 2. 11. 이후
비지정기부금	시가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

(3)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과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의 비교

현물기부에 대한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과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현물기부하는 경우와 개인이 현물기부하는 경우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 등의 평가방법에 차이가 있다. 2011. 3. 11.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법인이 현물기부하는 경우와 개인이 현물기부하는 경우의 평가방법이 동일하였으나, 2011. 3. 11.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양자 사이에 차이가 생겼고, 2020. 2. 11.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 차이가 벌어졌다.

현재는 법인이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을 현물제공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고, 개인이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을 현물제공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주목할 점은 앞서 개정연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인의 현물기부에 대하여는 일반기부금의 평가방법을 특례기부금의 평가방법에 맞추어 변경하였고, 개인의 현물기부에 대하여는 특례기부금의 평가방법을 일반기부금의 평가방법에 맞추어 변경한 것이다. 이로써 법인이 현물기부한 경우와 개인이 현물기부한 경우의 평가방법이 달라졌는데, 이에 대하여는 뒤에서 자세히 분석하기로 한다.

다. 세법상 현물기부한 자산을 시가와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의 비교

세법상 현물기부한 자산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와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과세상 어떠한 차이가 생기는지 간단한 사례를 통하여 비교해보기로 한다. 현물기부한 자산의 시가가 50, 장부가액이 20, 기부금한도액이 40이라고 가정한다.

(1) 법 인

(가) 세법상 현물기부한 자산을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기업회계상 현물기부한 자산을 시가로 평가한 경우 다음과 같이 분개가 이루어진다. 자산의 시가 50과 장부가액 20의 차액 30은 자산의 가치상승분, 즉 자본이득으로서 자산처분이익으로 처리한다.

(차) 기부금	50	(대) 자	산	20
			자산처분이익	30

세법에서는 현물기부한 자산의 시가 50 중 기부금한도 40을 초과한 10을 손금불산입하고, 기부과정에서 생긴 자산처분이익 30을 익금산입하므로 손금산입액은 $10(= 50 - 10 - 30)$ 이 된다.

만약 기업회계상 현물기부한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더라도 법인이 현물기부하는 경우 법인자산의 감소액은 시가상당액이므로 세법상으로는 일단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 상당의 수익이 법인에 실현됨과 동시에 수익을 상대방에게 제공함에 따른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그 손실을 기부금으로 처리한다.¹²⁾ 따라서 현물기부한 자산의 시가 50 중 기부금한도 40을 초과한 10을 손금불산입하고, 기부과정에서 생긴 자산처분이익 30을 익금산입하므로 손금산입액은 역시 $10(= 50 - 10 - 30)$ 이 된다.

결국 법인이 현물기부한 자산을 시가로 계상한 경우와 장부가액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액은 동일하다. 현물기부한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계상하더라도 자산의 가치상승분 만큼 기부액이 늘어나지만 그 금액이 고스란히 자산처분이익으로 계상되므로 시가로 계상한 경우와 차이가 없다.

(나) 세법상 현물기부를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기업회계상 현물기부한 자산을 시가로 평가하였으나, 세법에서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시가 50 중 장부가액 20을 초과한 30을 손금불산입하

12)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8320 판결.

므로 손금산입액은 $20(= 50 - 30)$ 이 된다. 세법상 장부가액 20은 기부금한도 40보다 적으므로 기부금한도초과액은 없다.

만약 기업회계상 현물기부한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장부가액 20이 기부금한도 40보다 작으므로 손금산입액은 그대로 20이다. 이 경우에는 기업회계와 세법의 기부액이 동일하므로 세무조정은 불필요하다.

(다) 양자의 차이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현물기부한 자산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 시가로 평가한 경우와 장부가액으로 평가한 경우의 효과는 기부금한도 초과 여부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현물기부한 자산의 시가는 기부금한도를 초과하고 장부가액은 기부금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또는 현물기부한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 모두 기부금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보다 기부자에게 유리하다. 2011. 3. 31.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이 지정기부금에 대하여도 법정기부금과 같이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한 것은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기부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2) 개인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현물기부한 자산이 건물, 구축물, 차량, 기계 등 감가상각 대상인 사업용 유형자산인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된다(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0호). 과거에는 위 자산의 처분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2017. 12. 19.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과세로 전환하였다. 이 경우에는 위 (1) (가)의 법인이 자산을 기부한 경우와 같이 자산처분이익이 계산되므로 필요경비산입액은 10이 된다.

그러나 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거나 현물기부한 자산이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감가상각 대상인 사업용 유형자산 이외의 자산인 경우에는 자산처분이익이 계산되지 않는다.¹³⁾ 따라서 현물기부한 자산의 시가

13) 그밖에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가 문제되나, 기부는 자산의 무상이전이므로 유

50 중 기부금한도 40을 초과한 10을 필요경비불산입하므로 필요경비산입액은 $40(= 50 - 10)$ 이다. 기부금은 시가로 평가하여 많이 인정받고 자산처분이익은 계산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산입액이 그만큼 커지는 것이다. 2020. 2. 1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이 법정기부금에 대하여도 지정기부금과 같이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변경한 것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기부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3) 개인비사업자

개인비사업자는 현물기부한 자산평가액의 일정비율을 세액공제받으므로 시가가 50이고 장부가액이 20인 경우 시가로 평가하면 세액공제가 많아져서 유리하다.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 30의 자산가치 증가분이 있더라도 기부로 인한 무상이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기부금은 시가로 평가하여 많이 인정받고 자산처분이익은 계산되지 않기 때문이다.

라. 기부금 수령단체의 취득가액

(1) 공익법인 등이 일반기부금을 현물제공받은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상 공익법인 등¹⁴⁾이 법인이나 개인으로부터 일반기부금을 현물제공받은 경우 그 취득가액은 장부가액이다. 과거에는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였으나, 2011. 3. 31.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시 장부가액으로 변경하였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5호의3). 법인이 일반기부금을 현물제공하는 경우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므로 공익법인의 취득가액을 그와 일치시키기 위한 취지이다.¹⁵⁾ 그러나 비사업자인 개인은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여

상성을 징표로 하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4)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는 “기부금단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상증세법에서는 “공익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나(상증세법 제16조,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2021. 2. 17.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시 상증세법에 맞추어 “공익법인” 또는 “공익단체”로 바꾸었다.

15) 기획재정부, 앞의 책[각주 10)], 2011, 198면.

장부가액이 없으므로 비사업자인 개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할 당시의 취득가액을 공익법인 등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5호의3의 괄호부분에 있는 “취득 당시”가 기부자를 기준으로 한 것인지 또는 공익법인 등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공익법인 등이 기부자산을 취득할 당시가 아니라 기부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할 당시라고 유권해석하였다.¹⁶⁾ 다만 공익법인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익법인 등이 취득할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2) 위 (1) 이외의 경우

공익법인 등이 일반기부금을 현물제공받은 경우 이외의 경우, 즉 공익법인 등이 특례기부금을 현물제공받은 경우 그 취득가액은 시가이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7호). 이에 따라 법인이나 개인이 특례기부금을 현물제공하는 경우로서 그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기부자산의 평가액은 장부가액이고 공익법인 등의 취득가액은 시가이므로 양자 사이에 불일치가 생긴다.

Ⅲ. 현물기부 과세에 대한 주요국의 입법례

1. 미 국

가. 기부자에 대한 조세지원

개인이나 법인이 IRC §170(c)에 규정한 단체에 기부하면 소득공제를 받거나 손금산입할 수 있다. 개인이 기부금을 지출하면 다음과 같이 기부금 수

16)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66(2021. 8. 10).

령단체의 종류에 따라 소득공제의 한도가 다르다.¹⁷⁾

- ① 교회 및 교회협회, 정규교직원과 정규과정이 있는 교육기관, 병원 및 의료연구기관, 연방정부, 주정부, 지역구 등 공개적으로 지원되는 자선단체, 공개적으로 지원되지 않지만 기부자 수에 제한이 없고 일반대중의 요구에 부합하는 등의 테스트를 충족하는 단체, 민간운영재단 등에 기부한 경우에는 50% 한도가 적용된다.
- ② 50%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기부금 수령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자선단체 사용을 위한 기부의 경우, 자본이득자산(capital gain property)을 50% 한도가 적용되는 자선단체에 기부한 경우에는 30% 한도가 적용된다. 자본이득자산은 기부일에 공정시장가치(Fair Market Value, FMV)로 매각하였을 때 기부자에게 장기자본이득이 발생하는 자산으로서 투자목적의 자산, 보유기간 1년 이상의 자본자산 등이 있다.¹⁸⁾ 공정시장가치는 합당한 지식을 가진 매도인과 매수인이 강요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환하고자 하는 가격으로서¹⁹⁾ 우리나라의 시가에 해당한다.
- ③ 50% 한도가 적용되는 단체 외의 자선단체에 자본이득자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20% 한도가 적용된다.

한편 법인이 공공자선단체, 민간재단 등에 기부금을 지출하면 10% 한도가 적용된다.²⁰⁾

나. 현물기부한 자산의 평가

개인이나 법인이 자선단체에 현물기부하는 경우 기부자산은 원칙적으로 공정시장가치로 평가한다.²¹⁾ 기부자가 현물기부한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여

17) IRC §170(b)(1).

18) IRC §170(b)(1)(C)(iv).

19) Reg. §1.170A-1(c)(2).

20) Reg. §1.170A-1(c)(1).

공정시장가치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 공정시장가치로 평가하면 기부자에 대한 효과적인 동기부여가 된다.²²⁾ 특히 자산의 가치 상승분, 즉 자본이득이 기부자에게 과세되지 않을 때 기부자에 대한 혜택이 커진다.²³⁾

기부자가 현물기부한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여 공정시장가치가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공정시장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에 비해 현물기부한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여 공정시장가치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일반소득자산(ordinary income property)²⁴⁾인지 또는 자본이득자산(capital gain property)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다르다.

- ① 일반소득자산을 현물기부한 경우에는 공정시장가치에서 자산을 매각한 경우 발생할 일반소득 또는 단기자본이득을 차감한 금액, 즉 장부가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 ② 자본이득자산을 현물기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정시장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50% 한도가 적용되는 자선단체에 기부한 자본이득자산에 대하여 30% 공제 한도 대신 50% 공제 한도를 선택한 경우, 법인이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사업비밀, 기술 등과 유사한 자산을 기부한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공정시장가치에서 자산을 매각한 경우 발생할 장기자본이득을 차감한 금액, 즉 장부가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21) IRC §170(b)(1).

22) Daniel Halperin, A Charitable Contribution of Appreciated Property and the Realization of Built-In Gains, *NYU Tax Law Review* 56, 2002, p.10.

23) Bruce R. Hopkins, *The Tax Law of Charitable Giving*, John Wiley & Sons, Inc., 2005, p.126.

24) 일반소득자산은 기부일에 공정시장가치로 매각하였을 때 기부자에게 일반소득이나 단기자본이득이 발생하는 자산으로서 재고자산, 보유기간 1년 이하의 자본자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 현물기부자산의 양도차익 과세

(1) 법 인

법인이 현물제공한 기부자산의 가치상승분에 대하여 과세할지 여부는 기부자산이 일반소득자산인지 또는 자본이득자산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소득자산은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자본이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기부단체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본이득자산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정시장가치로 평가하는 경우와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있는바, 공정시장가치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자본이득이 발생하므로 그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된다.

(2) 개 인

개인이 자산을 현물기부한 경우에는 기부자산의 가치상승분이 있더라도 자산의 무상이전에 따른 것이므로 자본이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기부를 장려하는 조세정책이 반영된 탓으로 보이나,²⁵⁾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는 피하면서 기부금공제만 받는 것은 비효율적이거나 불공정하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된다.²⁶⁾

2. 일 본

가. 기부자에 대한 조세지원

개인이 특정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소득의 40%와 특정기부금 합계액 중 적은 금액에서 2,000엔을 차감한 금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²⁷⁾ 특정기부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금, 지정기부금,²⁸⁾ 특정 공익증진법

25)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23, 1054면.

26) Roger Colivaux, Charitable Contributions of Property : A Broken System Reimagined, *Harvard Journal Legislation* Vol. 50, 2013, p.268.

27) 일본 소득세법 제78조.

인²⁹⁾에 대한 기부금, 인정특정비영리법인(인정 NPO법인)³⁰⁾ 등에 대한 기부금 등이 있다. 인정 NPO 법인에 대한 기부금, 공익사단법인에 대한 기부금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는바,³¹⁾ 세액공제는 소득세의 25%가 한도이다.

법인이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수령단체에 따라 공제한도가 다르다.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전액 손금산입한다. 특정 공익증진법인, 인정 NPO 법인에 대한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의2에 규정된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한도로 하고,³²⁾ 일반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에 규정된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한도로 한다.³³⁾ 개인이 일반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법인이 일반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손금산입을 받을 수 있는 차이가 있다.

-
- 28) 지정기부금은 공익사단법인, 공익재단법인 및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금으로 일반에게 널리 모집하고 교육 또는 과학의 진흥, 문화의 향상, 사회복지에의 공헌 및 기타 공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지출로 긴급을 요하는 것으로 재무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기부금을 말한다.
- 29) 교육 또는 과학의 진흥, 문화의 향상, 사회복지, 기타 공익증진에 크게 기여하는 법인으로 독립행정법인, 지방독립행정법인, 공익사단법인 및 공익재단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갱생보호법인 등을 말한다.
- 30) 인정 NPO 법인은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중 보건, 의료, 교육, 복지증진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법인을 말한다. NPO는 Non-Profit Organization의 약자로 비영리법인을 의미한다.
- 31) 일본 조세특별조치법 제66조의11의3.
- 32) 자본 또는 출자가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자본 등의 금액 × 당기 월수/12 × 3.75/1,000 + 소득금액 × 6.25/100] × 1/2이고, 자본 또는 출자가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소득금액 × 6.25/100이다.
- 33) 자본 또는 출자가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자본 등의 금액 × 당기월수/12 × 2.5/1,000 + 소득금액 × 2.5/100] × 1/4이고, 자본 또는 출자가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소득금액 × 1.25/100이다.

나. 현물기부한 자산의 평가

(1) 개 인

개인이 토지, 건물 등의 자산을 법인에게 현물기부한 경우에는 기부자산을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자산의 가치상승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데, 이를 간주양도소득세라고 한다.³⁴⁾ 자본이득에 대한 무한의 과세이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상이전에 대하여 양도로 간주하는 것이다.³⁵⁾ 다만 개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현물기부하고 그 기부가 교육 또는 과학의 진흥, 문화의 향상, 사회복지에의 공헌 등 공익의 증진에 크게 기여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³⁶⁾

개인이 현물기부한 자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나, 간주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시가에서 양도소득을 뺀 금액으로 평가한다.³⁷⁾

(2) 법 인

법인이 현물기부한 자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한다.³⁸⁾

다. 현물기부자산의 양도차익 과세

(1) 개 인

개인이 토지, 건물 등의 자산을 현물기부한 경우에는 기부자산을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자산의 가치상승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

34) 일본 소득세법 제59조.

35)金子宏,『租稅法』,弘文堂,2016,246頁.

36) 일본 조세특별조치법 제40조.

37) 일본 소득세법 제59조, 제78조, 조세특례조치법 제31조의4, 조세특례조치법 제40조.

38) 일본 법인세법 제37조 제7항.

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³⁹⁾

(2) 법 인

법인이 자산을 현물기부한 경우에는 기부자산을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자산의 가치상승분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다. 다만 법인이 중요 문화재 등으로 지정된 토지 등을 국가 등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양도 직전 장부가액의 차액과 2,0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 양도일을 포함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한다.⁴⁰⁾

3. 국가별 비교

미국, 일본, 우리나라 3개국의 현물기부자산의 평가 및 양도차익 과세 여부를 개인이 기부한 경우와 법인이 기부한 경우로 구분하여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법인이 현물기부한 경우 과세상 취급

국가	현물기부자산의 평가	양도차익 과세 여부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적으로 공정시장가치로 평가 • 기부시점에 가치가 상승한 경우 일반소득 자산은 장부가액으로 평가하고, 자본이득 자산은 공정 시장가치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소득자산은 비과세 • 자본이득자산은 과세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가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

39) 일본 소득세법 제59조, 조세특별조치법 제40조.

40) 일본 조세특별조치법 제65조의3.

국가	현물기부자산의 평가	양도차익 과세 여부
우리나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례기부금, 특수관계인 아닌 자에게 기부한 일반기부금은 장부가액으로 평가 • 특수관계인에게 기부한 일반기부금과 비지정기부금은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례기부금, 특수관계인 아닌 자에게 기부한 일반기부금은 비과세 • 특수관계인에게 기부한 일반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과세

<표 4> 개인이 현물기부한 경우 과세상 취급

국가	현물기부자산의 평가	양도차익 과세 여부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적으로 공정시장가치로 평가 • 기부시점에 가치가 상승한 경우 일반소득 자산은 장부가액으로 평가하고, 자본이득 자산은 요건에 따라 장부가액 또는 공정 시장가치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과세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 • 간주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면 (시가-양도차익)으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적으로 과세 • 비과세특례 적용시 예외 적으로 비과세
우리나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의 경우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과세

미국, 일본, 우리나라 3개국의 현물기부에 대한 과세제도를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미국이나 일본은 개인이 현물기부한 경우와 법인이 현물기부한 경우 기부자산의 평가방법에 일부 차이가 있긴 하나, 시가(공정시장가치)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개인이 현물기부한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법인이 현물기부한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등 평가방법에 차이가 있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현물기부자산을 평가할 때 기부금한도를 크게 고려하지 않으나, 우리

나라는 기부금한도를 고려하여 납세자의 유불리를 따지다 보니 평가방법의 차이가 생기고 제도가 복잡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법인이 현물기부하는 경우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므로 자본이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문제가 생기지 않으나, 미국이나 일본은 원칙적으로 시가(공정시장가치)로 평가하므로 자본이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문제가 생긴다.

셋째, 개인이 현물기부하는 경우 우리나라와 미국은 자본이득이 생기더라도 무상이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나, 일본은 원칙적으로 무상이전을 양도로 간주하여 자본이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IV. 현물기부에 대한 과세상 쟁점

1. 법인과 개인 간 과세형평성

가. 의 의

미국과 일본은 개인과 법인이 현물기부한 경우 원칙적으로 시가(공정시장가치)로 평가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법인이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을 현물기부한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고, 개인이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을 현물기부한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현물기부한 자산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법인이 기부한 경우와 개인이 기부한 경우 평가액이 다르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입법은 주요국과 비교할 때 매우 이례적이다.

과세당국은 법인이 현물기부한 경우에는 기부자산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고 개인이 현물기부한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법인과 개인의 현물기부를 늘리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하는바, 이러

한 설명이 타당한지 분석해보기로 한다. 또한 법인의 현물기부와 개인의 현물기부에 대하여 평가방법을 달리하는 것이 법인과 개인 간의 과세형평성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기로 한다.

나. 분 석

(1) 특례기부금

개인이 특례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기부금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부금 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따라서 현물기부한 자산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 시가로 평가하면 필요경비산입액이 많아져서 현물기부의 증가를 유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부자산의 시가는 50이고, 장부가액은 20인 경우 시가로 평가하면 50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나,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면 20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을 뿐이다.

반면 법인이 특례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50%의 기부금한도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기부금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개인의 기부와 차이가 있으나, 특례기부금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법인의 현물기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국가의 조세수입 증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법인의 특례기부금(법정기부금)은 당초 기부금한도가 적용되지 않다가 2005. 12. 31. 법인세법 개정 시 50% 한도를 설정하였는데, 기부금한도가 적용되지 않았던 때에도 장부가액으로 평가한 점이 이를 추단케 한다. 기부금한도가 적용되지 않으면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기부자에게 유리한데도 그 당시 이미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였던 것이다. 과세당국이 2005. 12. 31. 법인세법 개정 시 법정기부금(현재의 특례기부금)과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기부금의 평가방법을 장부가액으로 하면서 “법정기부금과 특례기부금의 경우 손비인정한도가 커 손비부인을 위한 시가평가의 실익이 적은 점을 감안”⁴¹⁾이라고 설명한 부분은 국세수입을 늘리기 위하여 특례기부금의 평가방법을 장부가액으로 규정하였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41) 재정경제부, 앞의 책, 2006, 146면.

현행 세법상으로는 법인의 특례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한도 50%를 적용하고 있으나, 소득금액의 50%를 초과하여 기부금을 지출하는 영리법인은 드물다. 이를 감안하면 현물기부한 자산을 시가로 평가하면 손금산입액이 많아져서 기부자에게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국세수입의 감소를 고려하여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법인의 특례기부금에 대한 현물기부를 늘리려면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개인이 특례기부금을 현물제공한 경우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있으므로 법인과 개인 간의 과세형평에도 더 부합한다.⁴²⁾

(2) 일반기부금

법인이 현물제공한 기부자산의 평가액이 기부금한도를 초과한 경우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면 시가로 평가하는 것보다 한도초과액이 적어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 법인이 일반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손금한도는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및 특례기부금 손금산입액을 공제한 금액의 10%이므로 특례기부금과 달리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현물기부한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이 현물기부하는 경우에는 법인과 달리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개인사업자가 현물기부하는 경우에도 법인과 같이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면 기부금한도의 초과가능성을 줄여서 현물기부를 늘리고,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⁴³⁾

위와 같이 개인사업자가 현물기부를 일반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도

42)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취급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합리적인 차별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헌재 2010. 10. 28. 선고 2009헌바67 결정 등). 법인이 특례기부금을 현물제공한 경우와 개인이 특례기부금을 현물제공한 경우 양자의 평가액을 달리한다고 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전자의 평가방법을 후자의 평가방법에 맞춤으로써 법인의 현물기부를 늘리고 법인과 개인 간의 과세형평도 더 높여 기부금 제도를 합리화할 수 있다.

43) 황규영, “현물기부금 가액결정 규정에 대한 소고”, 『세무와 회계저널』 제21권 제6호, 한국세무학회, 2020, 68~69면.

법인과 같이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는 개인사업자의 일반기부금 지출이 기부금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일반기부금의 경우 법인의 기부금한도는 10%이고 개인의 기부금한도는 그보다 높은 30%인바, 개인사업자가 소득의 30%를 초과하는 금액을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에 지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을지는 의문이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의 일반기부금에 대하여 시가 대신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면 기부금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들은 필요경비산입액이 적어져서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개인사업자가 일반기부금을 현물제공하는 경우 기부금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하는 납세자들이 어느 정도인지 실증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장부가액으로 평가방법을 변경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사업자와 비사업자 간 과세형평성

가. 의 의

현행 세법에 의하면, 개인사업자가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을 현물제공한 경우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비사업자인 개인이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을 현물제공한 경우 개인사업자의 평가방법을 준용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7 제1항). 또한 개인사업자가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을 현물제공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공제의 효과가 있으나, 비사업자인 개인이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을 현물제공한 경우에는 세액 공제하므로 개인사업자와 비사업자인 개인 간에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을 현물제공한 경우 사업자와 비사업자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과세형평성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기로 한다.

나. 분 석

(1) 비사업자인 개인의 현물기부 평가

비사업자인 개인이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을 현물제공하는 경우 자산 평가액의 일정비율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비사업자인 개인이 현물기부하는 경우 자산이 높게 평가되어야 유리하므로 현물기부를 늘리려면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 시가로 평가할 것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세법에는 비사업자인 개인이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을 현물제공한 경우 기부금의 평가방법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미비하므로 비사업자인 개인의 세액공제를 규정하는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현물기부하는 경우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⁴⁴⁾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7 제1항에서 비사업자인 개인이 현물기부한 경우 개인사업자의 자산평가 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을 준용하므로 별도로 소득세법 제59조의4에서 개인비사업자에 대한 평가규정을 둘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2) 비사업자인 개인의 세액공제

2014. 1. 1. 소득세법 개정으로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등 다수의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함에 따라 기부금도 종전의 소득공제방식에서 세액공제방식으로 바뀌었다.⁴⁵⁾ 소득공제방식에서는 동일한 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경우 한계세율이 높은 고소득자가 더 큰 세제혜택을 받게 되어 불공평하므로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이다. 이러한 개정은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증가시켜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⁴⁶⁾

44) 황규영, 앞의 논문, 69~70면.

45) 기본공제, 근로소득공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방식을 유지하였다.

46) 대표적으로 김진석, “소득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소득계층별 세 부

그러나 기부금에 대하여 개인사업자에게는 필요경비 산입이라는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면서 비사업자인 개인에게는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사업자와 비사업자 간 과세형평에 부합하지 않는다.⁴⁷⁾ 비사업자인 개인의 기부금 공제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함으로써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를 거두었지만 사업자와 비사업자 사이의 과세형평 침해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차별취급을 정당화할만한 합리적인 사유를 찾기 어렵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개인이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미국과 같이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프랑스와 캐나다와 같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국가도 있다.⁴⁸⁾ 기부금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어느 것이 더 적합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적어도 사업자에게는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비사업자에게는 세액공제를 적용하거나 반대로 사업자에게는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비사업자에게는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식으로 사업자와 비사업자를 차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소득불평등 완화는 기부금 이외의 다른 소득공제 항목의 세액공제 전환으로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와 비사업자 간 차별이라는 문제를 야기하면서 기부금을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개인사업자가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므로 비사업자인 개인에게도 필요경비적 성격이 있는 소득공제를 허용하거나 비사업자인 개인이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하므로 개인사업자에게도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업자와 비사업자 간의 차별을 없애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소득공제를 적용하면 한계세율이 낮은 저소득자의 기부금에 대한 조세지원 효과가 감소

담 차이 분석”, 『세무와 회계저널』 제17권 제5호, 한국세무학회, 2016, 175~198면 참조.

47) 권성준 외 2인, 『기부금 조세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 기부자를 중심으로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119~122면.

48) 프랑스와 캐나다의 개인의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하여는 권성준 외 2인, 위의 책, 79면, 90면 참조.

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일정 수준의 저소득자에게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선택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3. 기부자의 현물기부 평가와 기부받는 자의 취득가액

가. 의 의

기부자가 현물기부한 자산의 평가액은 기부금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부자의 손금이 되고 그것이 동시에 기부금 수령단체의 취득가액이 되어 세제 전체의 정합성을 갖추게 된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의하면, 법인이 일반기부금을 현물제공한 경우에는 기부자산의 평가액과 공익법인의 취득가액이 모두 장부가액으로서 일치하여 양자의 견련성이 유지된다. 그러나 개인사업자가 일반기부금을 현물제공한 경우에는 기부자산의 평가액은 시가이고 공익법인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으로서 불일치하고, 비사업자인 개인이 현물기부한 경우에는 기부자산의 평가액은 시가이고 공익법인의 취득가액은 비사업자인 개인의 당초 취득가액으로서 불일치하며, 법인이 특례기부금을 현물제공하는 경우에는 기부자산의 평가액은 장부가액이고 공익법인의 취득가액은 시가로서 불일치하는 등 양자의 견련성이 깨진다. 아래에서는 기부자산의 평가액과 공익법인의 취득가액의 불일치로 인하여 생기는 과세문제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분 석

(1) 법인이 특례기부금을 현물제공하는 경우

기부금 수령단체가 현물기부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 과거에는 기부금의 종류, 기부자가 법인인지 또는 개인인지 상관없이 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규정하였다. 그 후 2011. 3. 31.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정기부금(일반기부금)에 대하여는 기부자산의 평가액과 공익법인의 취득가액을 일치

시키기 위하여 기부자산의 평가액인 장부가액을 공익법인의 취득가액으로 규정하였다. 위 개정은 일반기부금에 대하여만 적용되므로 법인이 특례기부금을 현물제공한 경우에는 자산의 평가액은 장부가액이고, 공익법인의 취득가액은 시가로서 양자가 불일치한다. 이로 인해 기부자산의 가치상승분이 기부하는 법인과 기부자산을 취득하는 공익법인 누구에게도 과세되지 않는 과세공백이 생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기부자산 평가액인 장부가액에 맞추어 공익법인의 취득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개인사업자가 일반기부금을 현물제공하는 경우

2011. 3. 31.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인이 지정기부금(일반기부금)을 현물제공한 경우 기부자산의 평가액과 공익법인의 취득가액이 일치하게 되었다. 그러나 기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기부자산의 평가액은 시가인 반면, 공익법인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으로서 양자가 불일치한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의 기부자산이 기부금한도를 초과하면 과세관청은 기부자의 필요경비불산입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함과 아울러 취득가액을 낮추어 공익법인의 법인세 과세를 늘림으로써 중복적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기부자산 평가액인 시가에 맞추어 공익법인의 취득가액도 시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3) 비사업자인 개인이 일반기부금을 현물제공하는 경우

비사업자인 개인이 일반기부금을 현물제공한 경우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나,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기부자의 당초 취득가액이므로 기부자산의 평가액과 기부받는 공익법인의 취득가액이 불일치한다. 비사업자인 개인은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장부가액이 없으므로 기부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공익법인의 취득가액으로 규정한 것은 일견 수긍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기부자의 취득가액을 공익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면 기부자산의 평가액과 기부금 수령단체의 취득가액이 불일치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를 일으킨다.

첫째, 기부자가 현물제공한 자산의 가치가 상승한 경우 기부자의 취득가액을 공익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면 기부자의 자산가치 상승분을 공익법인이 부담하게 된다. 법인이 현물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과정에서 자산의 가치 상승분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므로 공익법인의 취득가액을 장부가액으로 규정하는 것은 기부법인이 납부할 법인세를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비사업자인 개인은 기부과정에서 자산의 가치 상승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익법인의 취득가액을 기부자의 취득가액으로 규정하는 것은 기부자에게 과세되지 않는 소득을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는 셈이 되어 논리적이지 않다.

둘째, 기부자가 현물제공한 자산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자산을 바로 매각하면 처분손실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비사업자인 개인이 10년 전에 5,000만원에 구입한 자동차의 현재 시가가 1,000만원인 상태에서 공익법인에 기부하고 그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자동차를 바로 시가 1,000만원에 매각하는 경우 4,000만원(= 1,000만원 - 5,000만원)의 처분손실이 실현된다. 기부 당시 시가 1,000만원에 불과한 자동차의 취득가액을 5,000만원으로 계산하는 것은 실질과 괴리가 있고, 공익법인은 이를 이용하여 4,000만원의 처분손실을 세금을 줄이는 데 이용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지 않다.

셋째, 현물자산을 기부받는 공익법인의 취득가액과 공익법인이 발급하는 기부금영수증상 기부액의 불일치로 과세행정의 혼란을 초래한다. 공익법인이 현물자산을 기부받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기부자의 취득 당시의 가액이고, 기부금영수증상 기부가액은 자산을 기부받은 때의 시가이다.⁴⁹⁾ 기부금영수증을 기부받은 때의 시가로 발급하는 것은 비사업자인 개인의 경우 장부작성의무가 없어서 장부가액을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대부분 기부받은 때의 시가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기 때문이다.⁵⁰⁾

49) 법인,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388(2021. 12. 28.).

50) 허원, “개인기부와 법인기부에 대한 세제혜택 비교 연구”, 『조세연구』 제22권 제4호, 한국조세연구포럼, 2022, 199~200면.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공익법인의 취득가액은 기부받을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개인의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법인이 기부한 경우와 달리 자산가치 상승분의 세금이 누락될 위험성도 없다. 다만 현행 세법과 같이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현물기부한 자산의 평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면서 비사업자인 개인이 현물기부한 자산의 평가액만 시가로 하면 개인과 법인이 공유하는 현물자산을 기부하는 경우 공익법인이 인식하는 취득가액이 여러 개 존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법인과 비사업자인 개인이 공동으로 1억원씩 부담하여 총 2억원에 취득한 자산을 기부하고 기부 당시의 시가가 6억원이라고 하면 법인이 기부한 지분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인 1억원인데, 비사업자인 개인이 기부한 지분의 취득가액은 시가인 3억원이 되어 동일한 자산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문제가 생긴다. 이 경우에는 장부가액 또는 시가 중 어느 하나의 가격을 공익법인의 취득가액으로 정할 수 밖에 없다. 생각건대, 자산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하면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 부분이 자산을 기부하는 법인이나 자산을 취득하는 공익법인 어느 누구에게도 과세되지 아니하는 공백이 발생하여 조세회피에 이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자산의 취득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근본적인 해결책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5조의3에서 공익법인이 현물기부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장부가액으로 규정한 것은 법인이 일반기부금으로 현물제 공한 자산의 평가액과 일치시키기 위한 취지이다. 법인이 현물기부한 자산의 가치가 상승한 경우 기부자산을 시가로 평가하면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만큼 기부액이 커져서 손금산입액이 많아지나, 다른 한편 같은 금액의 자산처분익이 생겨서 손금산입액을 상쇄하므로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와 차이가 없다. 다만 현물기부한 자산의 평가액이 기부금한도를 초과하면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보다 한도초과액이 적

어서 기부하는 법인에게 유리하다. 이를 고려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공익법인의 취득가액을 장부가액으로 규정한 것이나, 이로 인해 개인사업자, 비사업자인 개인의 경우에는 기부자산의 평가액과 공익법인의 취득가액이 불일치하여 위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법인이 특례기부금을 현물제공한 경우에도 기부자산의 평가액과 공익법인의 취득가액이 불일치하여 기부자산의 가치상승분에 대한 과세공백의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부자의 기부금한도초과액을 줄이거나 국가의 세수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법인이 특례기부금이나 일반기부금을 현물제공하는 경우에 장부가액을 기부자산의 평가액으로 규정하면서 공익법인의 취득가액과의 불일치가 초래되었다. 즉 2011. 3. 31.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정기부금(일반기부금)을 현물제공한 경우에만 공익법인의 취득가액을 장부가액으로 규정함으로써 개인사업자, 비사업자인 개인이 일반기부금을 현물제공하는 경우에는 기부자산의 평가액과 공익법인의 취득가액이 불일치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기부자산의 평가액과 공익법인의 취득가액의 불일치에서 생기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부자산의 평가액과 공익법인의 취득가액을 모두 원칙적으로 시가로 하여 양자를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보다 기부금한도초과액이 커져서 세부담이 증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세법의 정합성을 높이고 과세제도를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감수해야 할 몫이라고 판단된다. 만약 법인의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수준에서 제도의 개선을 도모하려면 기부금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부자산의 평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부자산의 평가액은 장부가액이고 공익법인의 취득가액은 시가로서 양자가 불일치하나, 이는 기부하는 법인의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외적인 조치로 이해하면 된다.

V. 결 론

금전기부와 달리 현물기부에 대한 과세의 경우 기부자산의 평가와 기부금 수령단체의 취득가액 산정의 문제가 따르므로 복잡한 양상을 띤다. 특히 현행 세법에서는 기부금의 종류, 기부자가 개인인지 또는 법인인지, 개인인 경우 사업자인지 또는 비사업자인지 등에 따라 기부자산의 평가가 다르고, 이렇게 평가한 금액이 기부금 수령단체의 취득가액과도 달라서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현물기부의 과세상 쟁점에 대하여 살펴 보았는바,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과 개인 간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보면, 특례기부금의 경우 법인은 장부가액으로 평가하고 개인은 시가로 평가하는데, 법인의 현물기부를 유도하려면 법인의 경우에도 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 일반기부금의 경우 법인은 장부가액으로 평가하고 개인은 시가로 평가하는데,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과 같이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개인사업자의 일반기부금 지출이 기부금한도를 초과하는 것인지에 대한 실증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개인사업자와 비사업자인 개인 간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보면, 기부금 지출에 대하여 개인사업자에게는 필요경비 산입이라는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면서 비사업자인 개인에게는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사업자와 비사업자 간 과세형평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필요경비적 성격이 있는 소득공제를 허용하거나 개인사업자에게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업자와 비사업자 간의 차별을 없애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비사업자인 개인이 일반기부금을 현물제공하는 경우 공익법인 등의 취득가액은 기부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개인과 법인이 공유하는 현물자산을 기부하는 경우 공익법인이 인식하는 취득가액이 여러

개 존재하게 되므로 법인의 기부자산 평가액에 맞추어 공익법인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기부자산의 평가액과 공익법인의 취득가액의 불일치에서 생기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는 기부자산의 평가액과 공익법인의 취득가액을 모두 원칙적으로 시가로 하여 세제의 정합성을 높이고 과세제도를 단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參 考 文 獻

1. 국내 문헌

- 권성준·송은주·허윤영, 『기부금 조세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 기부자를 중심으로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 기획재정부, 『2010 간추린 개정세법』, 2011.
- _____, 『2019 간추린 개정세법』, 2020.
- 김진석, “소득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소득계층별 세 부담 차이 분석”, 『세무와 회계저널』 제17권 제5호, 한국세무학회, 2016.
-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23.
- 이태로·한만수, 『조세법강의』, 박영사, 2018.
-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22.
- 재정경제부, 『2005 간추린 개정세법』, 2006.
- 허 원, “개인기부와 법인기부에 대한 세제혜택 비교 연구”, 『조세연구』 제22권 제4호, 한국조세연구포럼, 2022.
- 황규영,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손금산입 규정의 개선”, 『세무와 회계저널』 제21권 제3호, 한국세무학회, 2020. 6.
- _____, “현물기부금 가액결정 규정에 대한 소고”, 『세무와 회계저널』 제21권 제6호, 한국세무학회, 2020. 12.

2. 국외 문헌

- Bruce R. Hopkins, *The Tax Law of Charitable Giving*, John Wiley & Sons, Inc., 2005.
- Daniel Halperin, A Charitable Contribution of Appreciated Property and the Realization of Built-In Gains, *NYU Tax Law Review* 56, 2002.
- Roger Colinvaux, Charitable Contributions of Property : A Broken System Reimagined, *Harvard Journal Legislation* Vol. 50, 2013.
- 金子宏, 『租稅法』, 弘文堂, 2016.

<Abstract>

A Study on the Taxation of In-Kind Donations

Joongkyo Lee*

Donations are generally spent in money, but they are also spent in forms other than money, such as in-kind donations. Because in-kind donations involve asset evaluation, the taxation system is complicated compared to monetary donations. In the case of in-kind donations, there is a question of which amount to evaluate based on the fair market value or book value and the current tax law stipulates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type of donation, whether the donor is an individual or a corporation and whether it is a business or a non-business. Also the acquisition price of the public corporation is inconsistent. This paper examined the taxation problem arising from in-kind donations.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the case of special donations, corporations are evaluated at book value and individuals are evaluated at fair market value. In order to increase in-kind donations, corporations must also be evaluated at fair market value. In the case of general donations, corporations are evaluated at book value and individuals are evaluated at fair market value and in the case of individual businesses, evaluating at book value like corporations should be preceded by an empirical analysis of whether the expenditure of individual businesses exceed the donation limit.

Second, In the case of donations, it is not consistent with the tax equity between business and non-business to grant income deductions such as the inclusion of necessary expenses.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eliminate discrimination between business and non-business by allowing income deductions with the nature of necessary expenses to non-business or allowing tax deductions to business.

Third, if an individual non-business provides general in-kind donations, it is reasonable to set the acquisition value of the public corporation as the value at the time of acquisition of the public corporation. However, if the value of donated assets is the acquisition price of a public corporation, the acquisition

* Yonsei Law School Professor

price recognized by the public corporation may be separated if the in-kind assets shared by individuals and corporations are donated. However, in order to fundamentally solve the problem of discrepancy between the valuation of donated assets and the acquisition price of public corporations,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consistency by using both the valuation of donated assets and the acquisition price of public corporations at the fair market value.

▶ **Key Words** : in-kind donation, special donation, general donation,
fair market value, book value

